

붙임 1

기간제 (표준)채용공고(안)

하남소방서 공고 제2023 - 02호

2023년 하남소방서 조리사[대체인력] 채용 공고

경기도 하남소방서 조리사(기간제근로자/대체인력)을 공개 모집하오니,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.

2023. 07. 27.

하 남 소 방 서 장

I

채용분야 및 담당업무

채용예정기관 (근무예정부서)	채용인원	분 야	업무내용	비고
하남소방서 (신장119안전센터)	1명	조리사 (대체인력)	조리업무 및 환경정리 등	

II

응시자격

구 분	주 요 내 용
학력 및 전공	• 학력 및 전공 무관
성별 및 연령	• (연령)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(공고일 기준) • (성별) 성별 무관 • 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자 (근무개시일 전까지 전역가능한 군 복무자도 가능)
자격사항	•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
기타	• 인사 관련 규정 상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※ 결격사유는 Ⅷ 기타유의사항 참조 • 신체 건강한 자 •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사람

III

전형절차 및 접수 방법

□ 전형절차



- 신청서, 이력, 자격·경력 등 제출서류 등
- 「기간제 스마트 채용 접수 시스템」 통해 채용 절차 병행 진행
- 당해 직무와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등이 근무예정 직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심사



- 공무수행자로서의 직무 지식·기술, 태도 등을 평가
- 채용 예정인원의 범위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
- **합격자 등록포기 시 차 순위자 합격 처리 가능, 면접 불참자는 불합격 처리**
※ 응시현황 등에 따라 최종 합격자 결정

○ 전형일정

전형일정	일 시	비고
모집공고	2023.07.27.~ 2023.08.03.	• 하남소방서 홈페이지, 경기도청 홈페이지 게재 • 하남시청 홈페이지 게재 • 「기간제 스마트 채용 접수 시스템」
접수기간	2023.07.27.~ 2023.08.03. (10:00한).	• 제출방법: 「기간제 스마트 채용 접수 시스템」 ① 인터넷 「통합접수시스템」 검색 > 기간제 채용관 > “하남” 검색 ② 해당페이지 내 “신청” 카테고리 이용 신청 (회원가입 필수) ※ 접수 마감시간 : 23. 8. 3.(목) 10:00 한 ※ 응시원서 등 양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사용 • 문의전화: 031-799-4212
서류전형 합격자 발표	2023.08.03.	• 개별통보 및 「통합접수시스템」 ‘공지’ 카테고리에 게시 * 면접전형 일시 함께 공지 예정
면접·실기 전형	2023.08.04.	• 일시 : 2023.08.04.(금) 예정 • 장소 : 하남소방서 ※ 구체적인 일시·장소는 개별통보 및 「통합접수시스템」 ‘공지’ 카테고리에 게시
최종 합격자 발표	2023.08.04.	• 개인별 통보예정 ※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시, 장소, 최종합격자 발표는 개별통보 및 「통합접수시스템」 ‘공지’ 카테고리에 게시

※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는 [하남소방서 홈페이지\(http://www.gg.go.kr\)](http://www.gg.go.kr) 또는 **개별 통지예정**

□ 시험 방법

○ 서류전형

-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근무예정 직무 기준에 적합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**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**하여 합격자 결정
- 경력사항 및 자격증 가점을 참고하여 점수 부여, 심사항목에 대한 이상 유무 확인

○ 면접 및 실기시험 : 제2차 시험(포기자 및 불참자는 불합격으로 함)

-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 면접 및 실기(조리)시험 실시
- 직무수행에 필요한 조리 능력 및 인성 등 적격성을 검증
-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

□ 최종 합격자 결정

○ 최종 합격자 : 실기(조리사) 및 면접시험 합산 점수가 높은 순으로 결정

※ 동점자 우선순위 결정방법

1. 해당분야 경력기간이 많은 자
2. 자격증 다수 보유자
3. 공공기관에서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자

○ 예비 합격자 : 선발예정인원의 1배 별도 선발

- ※ 근무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 최종 합격자의 임용포기, 합격취소,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예비 합격자 채용

IV 제출서류

○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제출하는 서류

- (필수) 응시원서 1부(별지1호 서식)
- (필수) 이력서 1부(별지2호 서식)
- (필수) 자기소개서 1부(별지3호 서식)
- (필수)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(별지4호 서식)
- (필수)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및 서약서(별지5호 서식)
- (필수) 주민등록등본 1부(원본,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)

- (필수) 주민등록초본 1부(원본, 병역사항 포함_남성에 한함)

- (필수) 조리사 자격증(사본) 1부

- (해당자에 한함) 경력(재직)증명서(원본) - 각 기관발급용 1부

※ 제출서류는 자사이력서 양식(붙임)을 사용하여 「통합접수시스템」에 등록 (첨부)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면접시험 당일 제출하는 서류 (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)

- (필수) 신분증 지참
- (필수) 공정채용 확인서(별지6호 서식)
- (추후제출) 건강진단결과서(보건증) 1부 (병원 발급분)
※ 근무기간, 직위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인정되며 경력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

○ 최종합격 후 제출하는 서류 : 기본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 등 별도안내

V 근무조건

구 분	주 요 내 용
근로계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계약기간: 2023. 08. 05. ~ 2023. 12. 31.(5월) ※ 운영기간은 휴직자 조기복직, 예산소진 및 휴직연장 시 변경될 수 있음 • 근무일: 주 5일, 1주당 40시간(휴게시간 제외) ※ 단, 업무상 필요한 경우 토·공휴일·공휴일에 근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, 계약체결 시 근무 시간 및 휴게시간은 변동될 수 있음
근무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하남소방서
보수 및 복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기본급, 수당 등(월) : 240만원 ~ • 보수: 91,880원 (시급 11,485원) 주간근무 기준 • 기타 주휴수당, 시간외 근무수당, 연가보상비 등 • 후생복지: 복지포인트, 명절휴가비, 건강검진비 지원 ※ 경기도 고시 제2022-5148호 『2023년 경기도 생활임금 고시』 적용
기타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고용보험, 산재보험,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• 「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」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 ※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

□ 보 수(시급기준 11,485원)

구분	내용	급여	구분	내용	급여
시급	생활임금조례	11,485원 × 근무시간 × 근무일수	주휴수당	생활임금조례 × 소정근로시간	11,485원 × 소정근로시간
시간외 근무수당	생활임금조례 × 1.5배 × 시간	11,485원 × 1.5배 × 근무시간	연가보상비	생활임금조례 × 잔여연가일수	11,485원 × 잔여연가일수

※ 경기도 고시 제2022-5148호 『2023년 경기도 생활임금 고시』 적용

□ 근무조건 : 주 5일, 1일 8시간

- 식당 운영 상 필요한 경우 토·공휴일 근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은 변동될 수 있음
-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1주간 12시간 한도로 근로시간 연장가능
- 시간외 근무수당 별도 지급

VI 우대사항

□ 서류전형 배점 평정 시 우대사항

구분	우대사항
경력사항	•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에서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 기간제 근로자 또는 집단급식소 ¹⁾ 경력자
자격사항	• 조리분야 자격증 다수 소지자
기타사항	•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

1)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(집단급식소의 범위) 『식품위생법』(이하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2호에 따른 **집단급식소**는 **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**를 말한다.

□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가산점 적용 사항

구분	우대사항
배점 외 가산점 부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취업지원대상자: 취업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에 따라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만점의 10% 또는 5% 부여
	<div style="border: 1px dashed black; padding: 5px;"> <p>⇒ 취업지원 대상자의 채용시험 가점을 규정한 법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▲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1조 ▲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 ▲ 「5.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22조 ▲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4조 ▲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9 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장애인: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만점의 5% 부여 • 저소득층: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만점의 5% 부여 <p>※ 가산점은 전형별 만점 배점 외로 추가 가산되며, 지원자가 가산대상에 중복 해당할 경우 중복하여 가산</p>

○ 가산특전 관련서류는 원서접수 시 제출하여야 하며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및 가점 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(☎1577-0606) 및 지방보훈지청 등에서 확인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

VII 기타유의사항

□ 응시자격 중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.

<경기도 공무원 등 운영 규정>

[제10조 결격사유]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,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7.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

<식품위생법 관련법령>

【법 제40조(건강진단)】

- ①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.
-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영업에 종사하지 못한다.
- ③ 영업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.
- ④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등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의 종류는 총리령으로 정한다.

【시행규칙 제49조(건강진단 대상자)】

- ① 법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(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등의 살균·소독제는 제외한다)을 채취·제조·가공·조리·저장·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으로 한다. 다만,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한다.
-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은 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【시행규칙 제50조(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)】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음의 질병에 걸린 사람으로 한다.

- 1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군감염병
- 2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결핵(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한다)
- 3. 피부병 또는 그 밖의 화농성(化膿性)질환
- 4. 후천성면역결핍증(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에 따라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해당한다)

-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, 구비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.
- 응시자가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 간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(최종 채용 합격자, 전자문서 및 채용부서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는 제외)하며, 반환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파기합니다.
- 제출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
- 입사지원서 및 경험 혹은 경력 기술서 등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,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,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시 면접·조리 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차순위 대상자가 조리사로서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
- 응시자가 선발 예정(기준)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
- 합격자 발표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.
-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.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하남소방서 소방행정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☎ 031-799-4212

붙임 채용 관련 구비서류 서식 1부. 끝.

